

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
1. 기본사항

① 법인명 (재) 전통문화재단	②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 *****-**-*****
③ 대표자 박 덕 주	④ 기부단체구분 민법상 비영리법인
⑤ 전자우편주소 lms0333@artinw.com	⑥ 사업연도 2020-12
⑦ 전화번호 02-415-0532	⑧ 기부금지정연도 2020
⑨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석촌고분로 46번지 아트인센터	

2. 기부금의 수입·지출 명세

(단위: 원)

⑩ 월별	⑪ 수입	⑫ 지출	⑬ 잔액	월별	수입	지출	잔액
전기이월	-	-		8월	300,000		
1월	-			9월	200,000	400,000	
2월	500,000			10월	100,000	400,000	
3월	300,000	400,000		11월	200,000	400,000	
4월	100,000	400,000		12월	300,000	300,000	
5월	100,000	400,000		합계	2,700,000	2,700,000	0
6월	400,000						
7월	200,000			차기이월	-	-	

3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내사업)

(단위: 원)

⑭ 지출월	⑮ 지급목적	⑯ 지급건수	⑰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⑱ 금액
⑲ 연도별	⑳ 지급목적	㉑ 수혜인원	㉒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㉓ 금액
	미술영재 심화과정 강의비용	1	남여정	2,400,000
	상상그림책 출판사업 단체도서구입비	1	헉사곤	300,000
합 계				2,700,000

4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외사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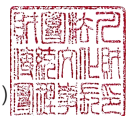
(단위: 원)

㉔ 지출월	㉕ 국가명	㉖ 지급목적	㉗ 지급건수	㉘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㉙ 금액
㉚ 연도별	㉛ 국가명	㉜ 지급목적	㉝ 수혜인원	㉞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㉟ 금액
합 계					

[법인세법 시행령]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
2021년 04월 20일

박 덕 주 (단체의 직인)



작성 방법

1. 기본사항 : ① ~ ⑨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국내지정기부금단체, 해외지정기부금단체, 한국학교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표 6의5), 전문모금기관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표 6의6), 공공기관등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표 6의7)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2. 기부금의 수입·지출명세

- ⑩란에는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.
- ⑪란과 ⑫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.
- 합계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.

3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내사업)

- 국내사업 관련 ○○지원사업(장학금지급 등), 일반관리비, 기금조성비(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), 그 밖의 비용(구체적인 내용 기재) 등 지출월별,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. 다만,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⑭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⑰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⑱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. 다만,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, 지급목적, 수혜인원,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.
- ㉑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인원을 적습니다. 예시)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.

※ 예시(장학금 지급: 10명에게 10만원씩 1월, 2월에 각각 지급, 복지단체 지원: A 복지단체에 2월에 1,000만원, 1회 지원(수혜인원 50명))

지출월	지급목적	지급건수	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금액
1월	장학금 지급	10	김우수 외	1,000,000
2월	장학금 지급	10	김우수 외	1,000,000
2월	복지단체 지원	1	A복지단체	10,000,000
∴	∴	∴	∴	∴
연간	지급목적	수혜인원	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금액
2013년	장학금 지급	10	김우수 외	2,000,000
	복지단체 지원	50	A복지단체	10,000,000
합 계		63		12,000,000

-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.
-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,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,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,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
4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외사업)

-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,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.
- ㉒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,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. 다만,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, 지급목적, 국가명, 수혜인원,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.
-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.